

학칙개정 소위원회 1차회의

일 시 : 2003. 12. 9. 11:00-12:30

장 소 : 여학생처장실

참 석 자 : 백태승 학생복지처장, 박영순 여학생처장, 김선훈 총여학생회장,
박태현 총학생회부회장, 김영희 상담원 상담실장

안 건 :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

토 의

- 총여학생회 개정안과 성폭력상담실 개정안중 총여학생회 개정안에 대한 중점토의를 제안하다.
-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당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개정을 제안하다.
- 규정의 표현(포괄적/구체적)에 대해 논의하다.

결 의

-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에 합의하다.
- 상담실장은 성폭력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교수로 임명하기로 하다(규정 제7조 ②항 신설).
- 상담실 구성에 전임상담원과 직원을 필히 두기로 하다(규정 제7조 ③항 변경).
-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교무처장을 포함하고, 여학생처장을 상담실장으로 표기하기로 하며, 관련사안에 참여하는 일반위원에 일반 교수위원을 포함하기로 하다(규정 제10조 ①항 변경).
- <사전처리에 있어서 상담실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다(규정 제14조 ④항 신설).>
- 위원회의 자체 조치내용에 가해자의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기로 하다(규정 제16조 ②항의 4 신설).
- 시행세칙의 조항중 규정개정에 합의된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 상담실장은 성폭력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교수중에서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기로 하다(시행세칙 제3조 변경).
-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교무처장을 포함하고, 여학생처장을 상담실장으로 표기하기로 하며, 관련사안에 참여하는 일반위원에 일반 교수위원을 포함하기로 하다(시행세칙 제8조 ①항 변경).
- 관련사안에 일반 교수위원을 포함하여, 교수 또는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에 일반위원이 참여하기로 하다(시행세칙 제9조 ③항).
- 시행세칙의 나머지 내용은 2차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붙 임 :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1부

기록 : 김영희

확인 : 박영순

가해자 지원명동(경계부분)
추가) 피해자명상
적용명위를 예방법까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현행규정	총여학생회 개정안	소위원회 조정안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u>이에는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u> 1) 교원은 전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촉탁직, 외인교수로 학생은 본교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재적생, 연구생, 교환학생으로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 학칙적용자의 범주에 모두 포함 * 2)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영향력 없음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u>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 교수 중에서</u>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u>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 교수 중에서</u>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u>성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 및 사건 처리경험과</u>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u>2인 이상의 전임상담원을 두어야 하며, 기타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두어야 한다.</u>	제5조(상담원의 수)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4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7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⑥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⑥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 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u>성폭력 예방 교육은 상담실에서 실시한다.</u> ② <u>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연 2회 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u> ③ <u>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u>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u>별도의 예방 교육 시간이 마련되지 않는 책자 배포와 게시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u> ⑤ <u>예방 교육 결과는 대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상담실장이 보고하며, 이 결과를 학내에 공개한다.</u>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u>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다.</u> ② <u>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교무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상담실장으로 교수 6인,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으로 학생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으로 구성된다.</u> ③ <u>일반 위원은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단 일반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 교수가 관련된 성폭력 사안에만 참여한다. 이 경우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u> ④ <u>일반 위원 중 교수는 상담실장의 추천, 직원은 조합장 추천, 학생은 총여학생회 추천으로 한다.</u> ⑤ <u>교수위원 중 여성위원(당연직, 일반 위원 포함)은 5인 이상으로 한다.</u> ⑥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u>모든 위원들은 한 학기에 2회, 방학기간에는 연수를 통해서 위원회 내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원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 해당위원은 위원직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학교 언론사를 통해 공개 사과한다.</u> ⑧ <u>위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 교육 이외의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u>교무처장</u>, 대학원교학처장, <u>상담실장</u>,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u>교수 3인</u>, <u>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u>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u>일반 교수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u>은 정기회의와 각각 <u>교수, 직원, 학생</u>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1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10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직원과 학생, 교수가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 교수인 사안을 말한다.	제9조(성폭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u>교수 또는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교수 또는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u>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 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 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1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2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u>同性</u>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4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u>동성(同性)</u>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상담 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u>同性</u>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1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2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6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7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제14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u>가해자, 가해자의 친족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u>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수 있다. ㉞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수 있다. ㉞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해야 한다.	〈34043한다〉 2차21야 금지 안함
제14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해야 하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5일 이내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③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34043한다) * ⑤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유사항이지 심리상담으로 함 ⑦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⑨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⑩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유사항이지 ⑪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	제14조(징계 및 조치) 심리상담으로 함

	담시킬 수 있다. ⑫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u>피해자의 동의 하에 일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⑬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u>한 달 이내</u>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⑭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i>⇒ 예산 지원 여야함</i>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정기

현행규정	총학생회 개정안	소위원회 조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u>성폭력 사건을 처리</u> ,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2.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u>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일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동일한 표현이므로 현행대로</u>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24년 1월 제1회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1.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u>상담실장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 교수로 임명한다.</u> ③ 상담실에는 <u>전임상담원과 직원을 두어야 한다.</u>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u>상담실장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 교수로 임명한다.</u> ③ 상담실에는 <u>전임상담원과 직원을 두어야 한다.</u>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연구	연구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대학원교학처장, 교무처장, 여학생처장(이상 당연직 5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위원, 학생위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u>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다.</u> ② <u>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교무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상담실장으로 교수 6인,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으로 학생 3인, 노동조합장으로 구성된다. => 현재 규정에서 교무처장을 포함.</u> ③ <u>일반 위원은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당연직 포함)은 5인 이상으로 한다. 일반위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 관련사안에 일반교수위원 포함</u>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2년, 일반 위원은 1년으로 하며, 단 당연직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대학원교학처장, 교무처장, <u>상담실장(이상 당연직 5인)</u> ,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u>일반 교수위원</u> , 직원위원, 학생위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u>피해자 보호</u> 5. <u>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u> => 비신고사건의 처리, 피해자보호도 이에 포함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u>있을</u>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 보호를 받는다. ③ <u>환경형 성폭력이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신고된 것과 동등하게 취급한다.</u> => ④ <u>상담실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u> ④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u>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들이 자유롭게 정당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거나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 ④내용에 포함 ⑥ <u>상담실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등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u> => ④내용에 포함 ⑦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u>상담실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u> ⑤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u>내릴 수 있다.</u>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 실명을 자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u>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 권유사항이지 실효성없으므로 삭제</u> <u>4. 가해자의 사회봉사 명령</u> <u>5. 피해보상</u> <u>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명령 => 권유사항이지 실효성 없으므로 삭제</u> 6.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u>3. 가해자의 사회봉사 명령</u>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 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 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u>이 규정은 2004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u>
---	--	--

2001. 8. 14
1/11
- 문서명 : <2001 여성연대 한/판> 100인위원회 관련 토론회 발제문
 - 작 성 : 2001. 8. 10.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회원 시타(sita@jinbo.net)

"나는 저 놈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 가해자 실명공개의 의미와 효과 -

0. 들어가며

100인위원회의 1차 실명공개 이후 만 8개월이 지났다. 우리의 활동은 운동사회, 전체 사회, 가해자와 피해자,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많은 고민과 논쟁거리들을 남겼고,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성주의자들의 문제제기가 대개 그러하듯이, 100인위원회의 문제제기를 누가 받아 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점은 애초의 문제제기를 역사 속에 위치짓고 그 의미를 생성시켜 내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 여성주의자들과의 토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반갑고 기쁜 일이다. 우리의 운동은 그 시작부터 대학 여성주의자들의 반성폭력 운동에 빚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싸움에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100인위원회의 운동 또한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서 있는 지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루어진 활동과 그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이 100인위원회 '전체'의 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공통의 입장을 내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개인네트워크' 조직의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앞서 말했듯이 100인위원회 내부에서 또한 논쟁은 있었고 지금도 많은 '다른'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00인위원회의 회원으로서, 그러나 개인적 입장과 관점으로부터 분명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발제를 하려고 한다.

1.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 : "나는 저 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1)

반성폭력 운동의 '전략'으로서의 가해자 실명공개? 그러나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라면, '전략'으로서의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100인위원회 회원들의 포지션은 가해자 실명공개를 (선택 가능한 여러 전략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불가피하고 유일한 운동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00인위원회에게 있어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선택'이 아닌 일종의 '비명'에 가까웠다.

우리는 운동사회의 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로서 우리 내부의 반여성적인 형태들을 많이 파왔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곳에서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비망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밭 딛고 있는 우리의 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이고 그 폭력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 2000/12/15 <보도자료 Q&A> 중

우리의 운동은 운동사회 성폭력의 극악한 상황과 은폐된 구조를 폭로하고 피해 경험을 발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경험에 입각한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통한 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게시판에서는 선풍리 '여성

1) 그러나 물론 '나는 저 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표현에서의 '나'라는 용어는 구체적 피해자 개인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가해자 실명공개가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100인위원회의 1차 공개가 몇몇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공격을 초래했고 그것에 대해 100인위원회가 매우 무력했다는 점은 분명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실명공개' 문제는 애초에 100인위원회가 제기했다가 내부 논쟁을 통해 암묵적으로 폐기한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개'라는 주장을 하게 만들었던 그 구조, 그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여성들을 '자발적으로' 침묵하게 하는 그 구조 말이다.

운동의 나아갈 길을 논함으로써 100인위의 문제제기를 화석시키거나, 우리가 한번도 자임한 적 없는 '한국 여성운동의 대표' 혹은 '여성주의자들의 대표' 자리를 강요함으로써 여성주의자들의 다양한 발언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누차 밝혔듯이, 우리는 집단적 피해자이자 잠재적 피해자로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자행되고 그것을 온존시키는 운동사회의 특수한 은폐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발언한다. 우리의 운동이 반성폭력 운동의 전부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2001/2/9 <정병도사건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에 대한 100인위원회의 입장> 중

이러한 '포지션'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토론에 있어 중요하다. 100인위원회의 발언이 기반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 '피해자'로서의 포지션이었다. 즉, 그것은 "나는 저 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의 것이었다.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를 '언어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해자 실명공개는 더없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가해자 실명공개' 이외에는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도,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었던 운동사회 특유의 가부장적 은폐 구조는 100인위원회 활동의 위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조건이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가부장적 운동사회, 게다가 '조직'과 '대의'와 '동지애'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화해와 용서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는 특수한 정당과 구조. 100인위원회 회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묻혀지고,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고, 가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지위의 잘나가는 '명사'가 되는 상황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사건은 결코 공개적·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함구방'이 떨어졌으며, 피해자가 수많은 2차가해에 방치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또 다른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녔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였고, 목격자였고, 앞으로 똑같은 폭력에 처해야 할 잠재적 피해자였다.

그러므로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가 갖는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① '소문'으로만 떠돌고 결코 '사실'로 인정받지 못해 온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들을 가해자 실명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은폐되어온 운동사회 성폭력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것을 사회적 문제로서 드러내는 것, ②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 ③ 폐쇄적 운동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자기방어로서 운동사회 전체에 가해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

2. 성폭력사건 해결 원칙으로서의 '가해자 실명공개'?

이제, '가해자 실명공개'가 반성폭력 운동 전체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할 차례이다. 100인위원회의 활동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하나의 섀에시셔널한 '이벤트'가 아닌 이상, 가해자 실명공개는 반성폭력 운동에서 반드시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할 논쟁점 중의 하나이다. 비록 100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표명한 적은 없으나, 가해자 실명공개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논리에 기반하여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일반적 '원칙'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전선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여기서는 위에서 정리한 100인위원회 실명공개에 세 가지 의미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토론을 해 나가고자 한다.

(1)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기

가해자 실명공개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가해자 실명공개 없이 사건을 '사실'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무수한 소문들, 몇백번 왜곡의 과정을 거친 술자리 비화(秘話), 그리고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흑백사진이 되어 잊혀지는 어떤 이미지 속에서이다. 따라서 불행히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목숨을 건 도약'은 그러한 일과 그러한 고통이 '존재했음'을 '사실'로 구성하는 일이다. 피해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만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벌어먹을 세상.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은 이 벌어먹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장해 왔다. '중거주의'에 기반한 법담론에 반대해 왔고, '헛 미친놈이나 저지르는 성가십임으로서의 강간'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성폭력 개념이 여성들이 처한 조건과 그녀들의 경험을 담아 내기에 가당치 않다는 점에서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주장해 왔으며,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성폭력 사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바로 저놈이 성폭력 가해자다' 라고 말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구체적인 피해자의 고통과 구체적인 가해 행위는 말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해자는 말해지지 말아야 하는가? 가해행위를 한 당사자의 구체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가해 행위자를 구체화시키는 것 - 즉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가해자 이름이 빠진 사건 개요란 양꼬 없는 편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구성해야만 한다. 그것이 거기에 존재했음이 명백한, 가해를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이 무엇이었던지가 흰 눈 위의 핏자국처럼 선명한, 그러한 종류의 '사실'로서 말이다.

(2)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폭력 가해자들의 제법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특히 더 그렇다. 남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여성을 모욕하고 공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비난과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가해자 실명공개는 남녀간 권력관계의 모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매우 정치적인 입장표명이기도 하지만,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상습범이라는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즉, 사건이 은폐되면 그 성폭력 가해자는 다시 유유히 성폭력을 할 것이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 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 2000/12/26 <입장글> 중

100인위원회는 1차 공개를 하면서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그토록 많다는 사실에 너무나 경악하고 분노하였다. 정병도 사건, 이영주 사건, 김성희 사건, 김용범 사건이 그러했고, 100인위원회가 2차로 공개했던 강철구 사건도, 작년에 있었던 박남철 사건도, 얼마 전 공개된 이한별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은폐된 사건'의 가해자들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말해지지 않았던 탓에 주변의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는 '누가 성폭력 가해자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와 권리를 주는 것이다. 100인위원회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잠재적 피해자 보호'의 의미를 강조해 왔으며, 그것은 (그 자체는 구리구리하지만)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가해남성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예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 채택되어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신원/사진을 방방곡곡에 붙여놓게 한 매건법의 예에서도 그 정당성이 재확인된다.

(3) 가해자의 행동반경 제약을 통한 피해자의 생활권 보장

가해자 실명 공개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이 가해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져옴으로써 일정정도 피해자의 생활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100인위원회가 공개한 '운동사회 성폭력'의 경우, 운동사회라는 엄청난 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폐쇄적 커뮤니티 속에서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공간 전체에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할 필요가 있었으며, 바로 그 점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피해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자 정당한 자기방어'로 위치지워 졌다.

코딱지만한 징계를 받거나 사과문 한 장 쓰고 나서 할 일 다했다는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가해자. 그 물을 볼 수가 없어 피해자는 휴학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뒤꼍이 자리에 붙잡히고 집안에 틀어박힌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가해자의 존재를 주변인들에게 인지시키고 가해자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행동반경이나 인간관계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것을 일정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 만약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적어도 폭력의 생존자로서 대우받으며 우호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것은 피해자 치유의 일

부이자 정당한 생활권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이미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학교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운동을 포기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3. 쟁점들 : 반성폭력 운동의 입장과 원칙을 다시 묻는다

100인위원회가 표방해 온 입장 및 원칙들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이 표방해 온 그것과 많은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르기도 하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사건 해결의 시작인가, 아니면 최후의 수단인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되는가, 아니면 가해자 면담 이후에야 그것이 가능한가? 가해자 실명공개와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문은 그 의미와 효과에 있어 어떻게 다른가?

대학 여성주의자들과 100인위원회 사이의 토론이 단순히 '서 있는 곳'과 '포지션'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100인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입장과 원칙을 되물어 보려 한다.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인 '실명공개사과' 원칙이 100인위원회 운동의 밑거름이자 자원이 되었듯이, 이제는 100인위원회 운동의 성과와 오류를 함께 되짚어 보고 각자의 전선을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1)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 실명을 공개하는가?

가해자 실명공개는 사건해결의 시작인가 아니면 최후의 수단인가? 100인위원회는 가해자 실명공개를 "성폭력 사건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가해자 실명공개가 크나큰 처벌로 과장되고 있는 상황은 운동사회가 얼마나 가해자 온정주의로 평태해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사건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즉 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해결의 완성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행위의 공표를 통한 피해자 인권회복의 첫걸음일 뿐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앞으로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 2000/12/26 <입장글> 중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100인위원회가 가해자 실명공개를 '사건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고 규정하게 된 맥락은 그것을 '사건 해결의 완성'이나 '가해자에 대한 크나큰 처벌'로 의미화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의미에서이다. 즉, '시작'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처벌'이 아님을, 가해자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별 사건들은 '언제나' 특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는 해결과정의 맨 처음에 올 수도,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다. 문제는 '언제' 공개하는가가 아니라, 가해자 실명공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100인위원회가 주장하는 '가해자 실명공개'의 의미는 첫째, 처벌이 아니며, 둘째, 사건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negative한 규정이다. positive한 규정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고 확장시킨 바 있다.) 그렇다면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100인위 운동과 비견되는 '가해자 실명공개사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 '어떤 포지션에 서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가?

100인위원회의 가해자 실명공개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포지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00인위원회의 포지션은 100인위원회가 제시한 사건해결원칙에 반영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할 때 가해자를 동의나 인준을 얻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가해자의 경쟁이나 교화를 책임질 의무는 더더욱 없다. 그러므로 '왜 사전에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느냐'는 '그들'의 요구는 우리에게 매우 엉뚱하고 괴상한 질문일 따름이다. 100인위원회에게 있어서 징계의 이행과 감시, 가해자 교육은 가해자 소속 조직의 몫이지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

자의 - 따라서 여성들의 몫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것은 '포지션'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는 여성운동조직이나 여성운동조직이 주축이 된 대책위원회였다. 그리고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가해자 자신이거나(실명공개사과의 경우), 제3자로 위치지워진 대책위원회였다. 여기서 '제3자'라는 과도한 표현을 쓴 것은 그것이 피해 당사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다만 몇발자국이라도 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문제는 여성운동조직과 '대책위원회'의 포지션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간다.

(3) 여성주의자들은 '공정성'을 표방해야 하는가? : 당파성의 문제

100인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 26일 발표한 입장글에서 <해결과 처벌의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이다, ② 성폭력 사건의 조사과정 및 사건 규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다, ③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는 성폭력 사건해결의 시작일 뿐 징계는 될 수 없다, ④ 가해자 소속단위 및 조직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 가해자 징계에는 징계내용, 징계이행여부 및 과정을 공표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⑥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은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는 것에서 완결된다. 사건의 성립과 규정, 조사의 과정, 해결 여부의 판단, 이 모든 것에 대해 100인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이다.

우리는 성폭력의 개념이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 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 사적인 자리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또 객관적 증거나 증인의 부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기억을 전제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폭력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성폭력은 그것의 물리적 심각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 권력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여성으로서 당했을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의 경험을 그 안에 위치 지워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에 의해 그 상황에 대해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 규정 내리는가'이다. - 2000/12/26 <입장글> 중

피해자와 2차 피해자들의 경험, 요구와 상황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접수 이후,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내지 이에 준하는 책임단위)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조사과정은 가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가해자와의 면담자료를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가해자와의 면담시에는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는 성폭력 사건의 규정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해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것을 성폭력으로 경험하였다면 성폭력 사건은 성립된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설명만으로도 성폭력은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의 조사와 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2000/12/26 <입장글> 중

100인위의 입장 속에서, 사건 해결과정을 '판단'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는 분리되어 있다. 사건 해결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이며, 여타 사건해결과정을 집행하는 것은 가해자 소속 단위이다. 그렇지만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많은 경우 사건해결과정을 '판단'하는 동시에 '집행'하는 주체였다.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피해자의 관점'에 서서 사건을 판단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이 '해결사'로서의 포지션과 겹쳐질 때, 일정한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너무나 많은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사건 해결주체로 의미화되어 왔다. 이때 '객관성'과 '공정성'은 여성주의적 관점과 실천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외피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면담은 해당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거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다는 의미에서의 '공정성'이다.

100인위가 제기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러한 '공정성의 외피'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존재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 단 둘 뿐이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본 후 '공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중립적 판단주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100인위의 주장은 '법적 판단주체'의 남성성에 대한 지적 - 경찰도, 검찰도, 재판관도,

법을 조항조차도 남성적이라는 여성주의적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다. 간단히 말해, '누구나' 특정한 위치와 특정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일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은 '제3자'로서의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장하는 자들의 포지션을 따져 묻고 그것이 '가해자의 관점'임을 드러내야 하며, 상반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여성문제 그 자체가 그러하듯이 성폭력 또한 '당파성'의 문제라면, 여성주의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잠재적) 피해자의 위치에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학 반성폭력 운동이 취해 온 '공정한 척 하기' 전략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은가? 그것이 예상되는 공격의 일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질 '나의 피해를 증명해 보라'는 입증 책임의 짐을 대신 짊어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공정한 해결사'로서 위치지워진 여성운동조직의 이미지는 첫째, 허구적 중립성을 재생산하고, 둘째,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며, 셋째, 가해자를 설득·교화·경생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4) 가해자 인권의 문제? : 유사(類似) 질문에 대처하기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한 대표적인 비난 중의 하나는 그것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날강도같은 논리는 대학 여성주의자들도 많이 접해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이 '가해자 인권' 논리에 대해 100인위원회의 운동과 대학 반성폭력 운동이 함께 언어와 논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100인위원회가 제기한 '피해자의 포지션'에 섰을 때, 문제는 훨씬 단순하고 어치구니 없게 느껴진다 - 가해자의 인권을 왜 피해자가 보호해주어야 하느냐 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가해자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일종의 유사(類似) 질문에 불과하다. 가령 이런 것이다. 재소자의 인권은 그 재소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과 비교하여 논의되지 않는다. 강도의 인권은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인권과 동일선상에 놓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인권은 결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도, 비교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잘나가던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 사실을 발화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불쌍한 얼굴로 다밀어 지는가를 의심해야 한다.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해자의 사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 그 자체이다. 누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아니면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공개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여성주의자들이? 또, 가해자 실명공개가 가해자의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인가?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

성폭력 사건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가해자 인권론'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악질적인 종류의 말뼉락화이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범죄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실체화하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피해자 치유의 일부이고, 피해자의 정당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긴급 조치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려는 또 다른 전략일 뿐이다. 너희를 피해자로 인정해 줄 테니 가해자한테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 이건가? 가해자의 실체는 온데간데없이 유령화시켜 버리고 '불쌍하게 당한 피해자' 이미지 하나 만들어 팔팔 끼고 웃웃 혀나 차면, 그래 너희의 그 잘난 양심이 우쭐하기야 하겠지, 뻔뻔한 놈들, 너들 같은 놈들이 있는 한 가해자 실명공개는 '주홍글씨'는커녕 '주홍 스티커'도 될까 말까다. 어디서 주위들은 건 있어서 '인권' 운운하면 다 통하는 줄 아는데,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가해자의 '사과문'을 필요로 하는가? : 하나의 제안

글을 마치고 전에 가해자 실명공개와 연관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학 반성폭력 운동과 100인위원회 양자 모두, 아직까지는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를 적어도 해결과정의 한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00인위원회의 사건 공개 이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몇몇 사건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 사과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병도 사건과 이영주 사건에서, 가해자의 사과문은 피해자들이 원했던 '진정어린 사과'이기엔커녕, 오히려 애써 피해자의 관점에서 규정해 놓은 성폭력 사건을 다시 '가해자의 맥락'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버리는 기회로 돌변해곤 했다. 거의 신과 소설에 가까운 그들의 사과문을 몇 번씩이나 띄워놓고 다시 써오라고

하는 것도 곤욕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지집단을 통해 힘겹게 성취한 '경험의 해석'은 재차 삼차 위협에 처했으며, 그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과 모욕감을 가져 왔다. 함께 싸우는 대책위원회의 여성주의자들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탕진해야 했다. 우리는 정말 '가해자의 사과문'을 필요로 하는가?

몇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피해 당사자들이 사과문을 원할 수 있다. 그것은 피해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둘째, '가해자 자신이 쓴 사과문'이 사건해결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가해자의 인정과 반성은 대개 그 동안의 사건해결과정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었다'는 하나의 징표로 여겨진다. 셋째, 성폭력 사건 해결이 '공동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명분을 만족시켜준다.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가해자에게 반성의 기회까지 주고 있다. 가해자 사과문까지 나왔으니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서 구성하는 것이 '가해자의 인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사건해결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많은 낡은 수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해자도 인정했다'라는 무기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사과문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사과문'이 아니라 '각서'를 받는 것이 어떤가? 가해자에게는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권리가 없으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각서에 서명하고 각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물론 그 각서에는 사건 내용, 사건 규정,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의 약속이 포함된다.

* * *

아직 제 정리되지 않은 무수한 논쟁점들 중에서 몇 가지 만을 두서 없이 골라 이야기해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100인위원회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100인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나의 '해석'에 기반하여 쓰여졌다. 자신의 포지션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성취되는 애매한 '동지의식'이, 포지션의 상이함을 드러냄으로써 귀결되는 '혼란'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대학 여성주의자들과 100인위원회의 포지션의 차이, 그리고 대학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포지션의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정치화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성폭력을 당하다.

호랑 (sidestory@freechal.com)

입을 열며

넌 최선을 다했어. 지금 이렇게 나를 위로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경안정제일 뿐이다. 마음속에선 다른 말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래, 물론 난 최선을 다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었어. 부지런한 바보는 일을 더 망치는 법이야. 나는 성폭력을 겪은 그녀(그) 주위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대학 4학년때 6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 겪었던 나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혹은 앞으로 대학이란 곳을 지나갈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내 어리석음을 밟고 지나 성폭력 경험을 넘어가라고.

새벽 5시

1198282. 새벽 5시 난데없이 삐삐가 울렸다. 1198282 ?.. 심상치 않은 숫자다. 전화기를 더듬어 찾아 음성을 들었다. 근처에 사는 후배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언니, 나 진영이에요. 지금 빨리 전화 좀 해 주실래요? 빨리요"

후배는 같은 내용으로 급하다며 세 번이나 남겨놓았다. 세번째에야 잠이 깬 것이다. 무슨 일이지?

궁금함보다는 우선 걱정이 앞섰다. 목소리도 그렇고 119라는 숫자도 그렇고, 전화를 했다. 진영이가 바로 받았다.

"언니세요? 아 다행이다. 연락이 없어서 나가보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언니 거기 어디예요? 지금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뭐 큰일난 것은 아니지?"

진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불안함이 더 커져갔다. 애가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뜰을 들이지?

"..연수가 강간을 당했어요"

순간 머리 속이 멍해졌다. 연수는 진영이의 룸메이트이다. 진영이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며 근처 편의점 앞에서 보자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겨우 자고 있는 언니를 흔들어 깨워 돈을 빌리고, 의료보험증을 찾아서 뛰어나갔다. 우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다만 진영이도 당황하고 있을 테니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편의점으로 가보니 연수와 진영이가 이미 나와있다. 새벽공기가 차서인지 몸이 부스스 떨려왔다.

"어 왔구나. 추운데 어디 잠깐 들어갈래?"

연수와 진영이는 둘 다 고개를 내저었다.

"안 추워요 언니"

"그래? 그럼 병원부터 가야할 것 같은데 연수 괜찮겠어?"

연수는 내내 아무 말이 없다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병원에 왜요? 언니 나 다치진 않았어요. 자고 있어서 아무 저항도 못했어요."

연수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나 역시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치료도 받고,대비도 하고 해야 하잖아. 그래,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면 급할 건 없겠다. 어디 들어가서 몸이나 좀 녹이고 가자"

우리들을 새벽부터 문을 여는 카페에 들어갔다. 연수는 가끔 틈을 났을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연수가 힘들면 진영이가 옆에서 말을 이어주었다. 사건은 이렇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날 신입생환영회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던 진영이를 기다리던 연수가 열방으로 놀러갔던 모양이다. 열방에는 그 방에 세든 여자애와 그녀의 애인, 애인의 친구가 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열방애가 연수에게 같이 놀자고 했고, 연수는 같이 놀다가 잔다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깊이 잠이 든 연수는 문득 기척을 느껴 눈을 뻗었지만 그때는 이미 모두 사건이 벌어진 후였다.

연수는 놀라 벌떡 일어나서 옷을 더듬거리며 찾았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잠그었다. 그때 진영이가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던 낯선 남자애를 보고 놀라서 "당신 누군데 여기 있는 거예요? 연수는 어디 있어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화장실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연수가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안 진영이가 화장실을 문을 두드리며 연수를 불렀다. 그 와중에 남자애는 가버렸다. 그 동안 연수는 화장실에서 계속 씻고 있었다고 한다. 진영이와 연수는 잠시 숨을 돌리고 바로 나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주 잠깐씩,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시간만큼씩의 정적이 있곤 했었다. 그 정적은 우리가 말을 고르는 시간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우리들은 그 일을 뭐라고 불러야 할 지 몰라서 말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연수에게 '연수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사후피임조치를 받아야 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웬지 그것이 너무 사무적으로 들릴까봐서 조심하고 있었다. 그건 연수가 '그 일'을 강간이라고 부르는 것에 새삼 놀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난 왜 그 사건을 강간이라고 연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했을까, 또 왜 당연한 걱정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난 강간이라는 말에 얽혀있는 말초적 관심들, 그리고 강간이라는 말이 한 개인에게 주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말초적인 관심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강간은 매우 질이 나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 모두가 망가진 것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연수에게 전하고 싶었다.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이것은 잘난 척이었다. 내가 그랬듯, 연수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들은 겨우겨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다.

산부인과에서

셋은 같이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꽤 멀리까지 갔는데도 산부인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 겨우 산부인과를 발견해냈다. 시간은 8시 40분이었고 병원은 9시에 문을 연다고 했다. 우리는 대기실에 앉아 의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상가된 얼굴에 말없이 앉아 있는 세 명의 여자애들을 보고 간호사들이 쭈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부인과에 물려와 심각하게 앉아있는 여자애들이라니. 하긴 궁금할 만도 했었을 거다. 마침내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처음이지요? 여기 진료카드좀 작성해 주세요"

연수가 진료카드를 다 써서 내자 간호사가 다시 물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셋은 모두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나와 진영이는 연수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가 결국 내가 말했다.

"사후피임조치를 받아야겠어서 왔어요. 진단서도 끊고요"

간호사는 표정관리를 전혀 못해내었다. 아 네-라는 말과 함께 돌아갔을 뿐이다. 9시가 다가오자 의사가 출근을 했는지 안에서 연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같이 들어가려고 일어나자 간호사가 안된다고 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기가 초조해서 계속 서성거렸다. 진영이도 마찬가지였다. 생각보다 빨리 연수가 나왔다. 그때 처음으로 연수는 황당하다고 화를 내는 표정이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진단서도 못 끊어주고 사후피임조치도 할 수 없단다. 진영이와 나 역시 어이가 없었다.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간단한 조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에게 물었다

"아니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그 정도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의사는 사후피임약은 효과를 신용할 수 없어서 조제할 수 없고, 진단서는 우선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

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흘린 말꼬리는 이거였다

"강간의 경우 법정문제로 될 경우 이 병원에서는 책임을 못지요. 떼네 가보세요"

결국 이 의사는 귀찮은 것이었다. 불가능할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굳이 귀찮을지도 모르는 일을 떠맡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떼네 어디 가면 되냐고 했지만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대학병원이나 큰 곳을 가보라고 했다. 그동안 무서울만큼 조용하게 말하던,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던 내가 망가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나는 화가 많이 났다. 진영이도 화가 많이 났고, 연수는 울상을 짓고 있었다. 진영이와 연수는 병원을 나가려고 하고, 나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욕지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미안하다며 밀어내는 분위기였다. 이대로라면 큰 병원에 가더라도 문전박대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전화를 했다. 114에 걸어 성폭력상담소번호를 알아내고 상담소에 전화를 했다. 상담소에 간단히 상황을 말하고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그 병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두시간정도 걸리는 곳이었다. 정말 분통이 터지기 시작했다. 안돼..내가 화를 내면 안돼..내가 이성을 잃으면 안돼..라고 계속 마음속을 다스렸다. 그리고 나갔다. 연수와 진영이는 상담소에 전화 해서 병원을 알았다고 하니 안심하는 눈치였다. 새로운 병원에 도착했다. 카드를 내밀었다. 보니 별게 다 있었다. 카드의 병명에 강간이라고 쓰니 간호사가 한 장을 더 주었다. 강간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병원은 상담소와 연관이 있으니 절차를 아는 모양이었다. 간호사의 태도도 병원의 분위기도 좀 더 안심이 되었다. 한참을 기다리고 연수이름이 불러 간호사에게 같이 들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걱정말라며 기다리라고 했다. 연수는 혼자 들어갔다.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는 상담소가 소개해준 곳이니 아까처럼 황당한 경우는 없겠지 싶어 마음이 좀 놓였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연수가 나왔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놀라서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아파서 그래? 여기 앉자. 왜 그래? 괜찮아?"

연수는 얼굴을 굳히고 입만 간신히 움직이며 말했다

"의사가 그렇게 묻은 왜 안 잠그고 잤냐고 하더라구요"

이번엔 진영이가 소리를 질렀다

"자취집 방문 안 잠그고 잔게 이유라는 거야? 여자끼리 모여사는 자취집에서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잘 일이 뭐가 있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진영이가 소리를 지르자 멍하니 보던 연수가 피식 웃었다. 나도 피식 웃음이 났다. 소개를 받아 간 곳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 병원에서도 이런 말을 듣다니. 그래도 치료와 진단을 해주었으니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걸까?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당신이 몸관리를 잘못해서 이 모양이잖아'라는 말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우리는 약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사후피임약은 의료보험혜택이 안되는 약이라서 돈도 많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셋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별거 아닌 치료 한번 받는데 7시간이 걸렸다. 연수와 진영이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며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나도 그 집으로 같이 갔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한 기분이었다. 겨우 병원 한번 가는데 생고생을 하고 오니 진이 다 빠져 버렸다. 이제 우리는 조금 긴장이 풀어져서 아까 상황에 대해 이리저리 곱씹을수도 있게 되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 갔던 그 산부인과에서 기혼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고 '어제 피임도구가 다 떨어져서 피임을 못했어' 사후피임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의사는 진료에 응했을까?

친구들은

강간범의 연락처와 신원을 파악해놓은 진영이가 연락을 했다. 다음날로 약속을 잡았다. 연수의 친구들이 연수옆에서 마음을 덜어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우선 학교에 가서 연수가 빠진 수업을 생겨 교수에게 연수가 아프다고 말해 놓았다. 그리고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다. 상담소에서는 우선 찾아와보라고 했다. 나는 당사자에 물어본다음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당사자라니. 그렇구나. 나는 당사자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 일이 있고 근 3개월간 지속되던 현상이었다. 나는 계속 연수와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모르겠지만 진영이도 비슷했다. 연

수에게 입혀지는 모든 상처들은 내게도 입혀졌다. 나 자신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연수에게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다. 강간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이 내게도 상처가 되는데 연수한테는 얼마큼일까 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고 우리들은 모두 용기를 내어 얘기를 시작했다. 진영이와 연수와 나는 오래 얘기하면서 강간범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의논했다. 무섭게 구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사무적으로 이야기할까...우리들은 어쨌든 그 사람이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올 경우는 두번 얘기할 생각도 하지 말고 대중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말자고 했다. 우선 말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자고 중론이 모아졌다.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는 연수를 위해 우리는 물래 녹음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태도와 말의 내용같은 것을 연수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됐다. 진영이와 나는 조금 일찍 가서 녹음기를 설치하고 강간범을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이 되었다. 흥분하면 안돼. 흥분하면 안돼. 아무리 열을 받고 화가 나도 흥분하면 안돼. 침착하자. 나는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학군단 복장을 한 4명의 남자가 약속한 카페에 들어섰다. 진영이가 나를 찔렀다. '저 자식이에요 언니' 그랬다.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군복으로 차려입고는 위풍당당하게 들어서는 '그들'을 보고 나는 기가 질렸다. 너무하네. 저건 뭐야. 순간 연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떠벌렸을 강간범이 머리속에 그려졌다. 나는 뜨겁게 고인 침을 삼키고 일어났다. 못 알아보았는지 군복들이 우리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들도 일찍 온 편이라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말소리가 오고갔다 "아..그래서 어찌자는 거냐? 통화할 때 뭐래?...우리가 이렇게 물려오면 좀 겁날거야 그지?" 강간범은 굳어져 있었고 친구들은 기분을 풀어준다고 이것저것 얘기를 주워섬겼다. 그렇군. 겁주기 위해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온거군. 2명의 여자애들과 군복을 입은 4명의 남자들.

나는 그쪽으로 가서 말했다.

"저 이쪽입니다. 관계없으신 분들은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뜸 말이 돌아왔다

"그쪽도 관계없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처음 들은 강간범의 말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해도 이렇게 당당한 태도일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나와 진영이는 적잖게 당황했다. 그리고 화가 났다.

"진영이는 목격자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연수의 대리인 나온거예요 연수가 댁 얼굴을 직접 대하는 게 싫어서 부탁한 겁니다"

나는 딱딱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쪽도 두명이니깐 우리도 두명으로 하겠습니다. 친구 들은 다른 자리에 가서 있도록 하죠"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쨌든 강간범의 주장은 자신은 연수가 동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저지른거라고 했다. 그가 말한 동의의 근거는 연수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잠이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는 거였다.

자. 얘기는 끝이었다. 진영이와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리를 떴다. 군복들은 우릴 붙잡았다. 얘기를 더 들어보라는 것이었다.

"좋게 좋게 해결하자구요. 다들 학생이고 한데..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좋게 좋게 라면 합의를 보자는 건가요? 합의라면. 혹시 돈을 말하는 거예요?"

"아 꼭 돈만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생각을 좀 해보자구요"

"아뇨 더 이상 얘기 들을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연수더러 결정하라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한 얘기는 녹음했으니 연수가 듣고 판단할거예요.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간죄를 범하신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우리는 자리를 떴다. 허락도 안 받고 녹음을 했다고 아우성을 쳐대던 그들은 우리가 이 사건을 강간이라고 단언지어 얘기하자 사색이 되어 헛말을 해댔다. 피곤했다. 저항을 안해서 동의한 줄 알았다며 그래서 이것은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란 다. 강간범과 그의 친구들은 그때부터 법률지식을 들먹이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피곤했다. 정말 피곤했다. 이 사람들과는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다. 연수는 어때요?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 묻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사람수로, 군복으로

자신이 남자라는 것으로 위협을 주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돈애기를 꺼냈고, 화간이라고도 했다. 진영이와 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눈 앞에서 보고 있었다. 강간범의 친구들은 우리더러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게다가 그렇게 될 경우 연수가 더 힘들지 않겠냐며 돈을 줄테니까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하였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것은 재수없는 일이었다고, 그들이 주변에서 주워듣기로는 이런 일은 여자쪽이 움츠러들어야 할 일, 그래서 설사 자신들의 친구가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빌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인 모양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의 친구들을 마음속 깊은 곳부터 강간범과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다.

한편 연수의 친구들은 연수에게 어떻게든 몰라줬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연수를 좋아했던 과 선배가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나와 사건을 알게 되었다. 연수는 그 선배에게 당장 집으로 내려가라고 혼이 났다. 그 선배는 우리들에게 번갈아 호출을 하며 연수를 당장 내려보내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 사람은 연수가 이런 사건에 휘말려든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았다. 실제로 얼마나 연수가 힘들어 했는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시에 연수는 휴학을 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던 중이었다. 학기중이라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휴학을 하면 돈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힘들더라도 학교를 끝까지 다녀야 겠다고 이를 악물지만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다는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던 상황이었다. 그 사람은 연수에게 학교는 무슨 학교냐며 소리를 질렀다. 휴가 나온지 이틀만에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모양인지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히려 연수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모두는 그 사람이 휴가를 마치고 빨리 군대로 다시 들어가기를 빌었다.

1-2학년의 연수의 여자동기들과 여자후배들은 연수의 사건을 부담스러워했다. 가능하면 그 일을 연수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연수에게 그 사건을 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연수를 도와주는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다는 거였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3-4학년쯤 된 여자들,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여학생이 연수를 격려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연수의 주위 사람들은 내놓고 걱정을 하면 연수가 혹시 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수 앞에서는 되도록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당장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하는 연수를 위해 돈도 모으고, 연수 밥도 사먹이고...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연수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다. 그것은 강간범의 친구들과는 아주 다른 태도였다. 강간범의 친구들은 사건을 입에 올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늘 그에게 그 사건에 관련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실제로 법률을 공부하던지, 인맥을 알아보던지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연수의 친구들은 연수가 입은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언제나 연수에게는 "이제 정말 괜찮은거야? 견딜 수 있겠어?"라는 질문이 돌아갔다. 나 역시도, 진영이 역시도 연수를 그렇게 대했다. 사실 나는 거의 연수만큼 상처를 받고 있었지만 나의 아픔의 크기보다 연수가 한 100배쯤 더 클거라는 생각으로 연수를 대하고 있었다.

이건 아마 연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다. 걱정되는 사람, 챙겨줘야 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취급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부심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태도였다. 그에 반해 강간범의 친구들은 매우 담백하게 강간범을 바로 그 사건으로 놀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들을 그 사건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언제나 연수에게 걱정스럽게 괜찮은거지?라고 묻곤 했고 연수는 내게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안심이 되었다. 내는 연수가 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 연수가 내게 말했다.

"언니, 괜찮아? 힘들지.."

"아나. 힘들긴..내가 뭘 했다고 힘들어..제대로 일이 안풀려서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힘들진 않아"

나는 연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못견뎠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건은 계속 꼬여갔고 나는 지치고 힘들었다. 되는 일도 없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이 창피해서 연수에게는 언제나 미안하다고 했고, 연수가 미안하다고 하면 화를 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밥이나 잘 좀 챙겨먹고 다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연수는 나때문에 언니가 고생이라며 또 미안해했다.

가족들은

연수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겹쳐서 정신없는 틈에 자신의 일마저 말쑥드리면 정신이 나가실 거라는 말이었다. 내 생각에도 굳이 부모님이 알아서 도움될게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상담소에서는 고소를 할거면 부모님이 알고 있는 편이 좋을거라고 충고해주었다. 연수는 완강했다.

"안돼, 언니. 아직은 나 못말하겠어요 나중에 기소가 되면 그때 말할게."

연수의 부모님들은 고지식하거나 폭력적인 부모님들이 아니었다. 연수는 자신이 이 일을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힘이 될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 말을 할 수 없어했다. 나 역시 연수네 부모님들을 뵈는 날이 없었다. 내가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책임을 추궁받을까봐 두렵기도 했고, 또 연수를 끌고 집으로 내려가 버리실까봐 겁도 났다. 그에 비해 강간범의 가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내가 있는 총여학생회실에 전화가 왔다. 그곳에 있던 애들이 나에게 전화가 계속 끊기거나 나를 찾고 없다고 하면 누군지 말을 안하고 끊어버린다고 했다. 진영이가 받았다. 누구인지 물어보았더니 강간범의 엄마라며 나를 바꿔달라고 했다. 나는 안받겠다고 했다. 없다고 하라고 했다. 그 엄마와 통화할 이유가 없었다. 전화는 계속 왔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나를 찾길래 본인이라고 했다. 누구시냐고 했더니 우리학교 학생이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애들이 그 엄마의 목소리라고 했다. 나인 것을 확인하자 저쪽에서는 쌍욕이 터져나왔다.

"야 이 씨팔년야. 니가 뭘데 남의 일에 나서서 지랄이야. 우리가 돈 많은 줄 알고 뜯어내려고 그래? 착각하지마 이 양갈 보같은 년아. 죽을 줄 알아."

나는 잠시 멍하게 욕을 다 듣고 있었다. 진심으로 욕을 하면 이렇게 무섭게도 들리는구나 싶었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무서웠다. 아들을 보호하려는 이 엄마의 집념이 무서웠다. 전화는 다양했다. 사촌형이라는 사람. 친구. 누나까지 돌아가며 전화를 했다. 그 중 정중하게 그만두라는 전화도 있었고 잘해보자며 웃음을 흘리는 전화도 있었다. 집으로도 전화가 왔다. 호술기에는 기분나쁜 숫자들이 찍혔다. 그러기를 며칠, 우리는 이 전화들을 녹음하고 싶었지만 장비가 없었고 방법도 몰랐다. 겨우 자동응답전화기와 녹음기를 구했다. 그러나 잠음이 너무 심했다. 하루는 이런 전화가 왔다. 강간범의 친구라고 전화한 그는 "자꾸 지랄하면 가만히 안둔다. 너 남 일에 나서지마. 그러다가 다쳐,"라는 말과 함께 끊었다. 얼마 뒤 후배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우리 학교에 강간범의 먼 친척이 다니는데 개네 엄마가 그애에게 나를 해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정말 겁이 났다.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혼자 있지 않았다. 주위의 친구들 역시 내가 혼자 있으면 안된다며 시간마다 내게 연락을 하기도 했다. 어쩌다가 혼자 잠깐 학교앞에 서 있는 일이 있었다. 2시쯤이었다. 대낮인데다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는 계속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땀이 흘렀다. 저 위쪽에서 남자들이 한 군단을 이루며 내려오고 있는 걸 보자, 우선 그들 중 강간범의 친구가 없을까 살펴보았다. 친구들에게는, 그리고 연수에게는 내가 겁을 집어 먹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의연한 척 하고, 혼자 다니지 말라는 충고를 한 킬로 흘려 듣는 시늉을 냈지만, 단 10분도 혼자 있지 않기 위해 애쓰던 것이 생각난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나는 연수에게 가족에게 알리자고 했다. 학교에서 경찰에서 우리가 어리다고 짚보는 것이 실감이 났다. 강간범의 가족들은 학교로 찾아와서 선처를 빌고 교수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바로 불려가서 그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교양있게 굴었는지를 칭찬하는 어른들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들었던 그 욕지거리들은 꿈이었나 싶었다. 연수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집으로 내려갔다. 연락하기로 한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서야 전화가 왔다. 풀기없는 목소리의 연수였다.

"언니...미안해..나 못 말했어요..내일 올라가서 얘기해요"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서울에 돌아온 연수는 지쳐 보였다. 먼저 와 있던 진영이와 연수는 한참 이야기를 하고는 손뼉을 쳤다.

"그래, 그때 옷 가지러 집에 들어갔을 때 좀 이상했어. 그때 등본하고 수첩을 가져갔나 보다"

얘기를 들어보니 강간범이 연수의 집까지 내려와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추측해본 것이었다.

"우리 오빠 얘기까지 알고 있더라구요..도대체 그런 얘길 어떻게 아는거지.."

연수네 오빠는 군대에 있는데 작은 사고가 나서 최악의 경우 군사재판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강간범이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연수는 다 그만두고 싶어했다. 사실 이때쯤에는 나도 다 그만두고 싶었다. 진영이와 연수는 경찰서에 갔고, 나는 다른 애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연수가 원한 거였어. 내가 고집을 부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라고 생각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연수가 원한 거라고 나를 위로하던 중이었다. 비겁하게도 말이다. 연수와 진영이가 왔다. 둘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언니, 고소 취하 안했어..막상 할려고 하니깐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어.."

둘은 경찰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협박에 의해서 취하하는 것이니 취하할 필요없다고 했다 한다. 전에도 경찰한테 계속 갔지만 진행을 시키라고 격려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이때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모른다. 강간범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시달리던 우리들은 "한번 해보자..잘못한 것은 저쪽인데 우리가 왜 이려고 있어야해?"라고 위로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등을 두드려 줄 때마다 큰 힘이 되었다. 경찰의 한 마디가 고소를 치하하려던 마음을 돌린 것이다. 취하하지 말라고 단언한 것은 그 경찰뿐이었다. 모두 힘들면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했고 연수를 위해서도 그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때였다.

우리에게도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이 필요했다. 나는 회의중에도, 경찰서에서도 어린 여자애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강간범이 준비해둔 어른이란 카드는 아주 효과적이었다. 아무도 우리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에게도 가까운 어른이 필요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강간범과 경찰서에서의 호출이 있을때 항상 옆에 있어주며 함께 힘이 되줄 어른이 절실했다.

학교에서는

학교안이 온통 이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대자보는 연일 내용을 달리하며 붙여졌고 떨어졌다. 일이 이렇게 커질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간범은 1차합의를 통해 학교를 휴학하고 사과대자보를 붙이기로 했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도적인 학내 성폭력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자보를 붙였다.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 갔다. 찔찔했지만 한시름이 놓아졌다. 다음날 학교를 늦게 택시를 타고 올라온 내게 후배가 말했다.

"누나. 어떻게 된거예요? 저쪽에서 대자보가 붙었던데?"

나는 구르듯 중앙대자보판 앞까지 뛰었다.

'저는 강간범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저항을 하지 않아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화간입니다.'

하루만에 합의가 깨졌다. 그때부터 대자보전쟁이 시작되었다. 반박대자보를 붙이며 강간범도 반박을 해댔다. 다치는 것은 연수였다. 근거없는 소문들이 떠돌았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쪽에서 붙인 대자보가 붙이고 한 시간도 안지나서 없어졌다 보다. 강간범의 친구는 우리에게 전화를 했다.

"거 치사하게 굴지 마시다. 왜 때고 그래요? 힘들게 쓴 걸"

우리가 안했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 연수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간범이 계속 이름을 밝히겠다고 협박을 하자 내린 결정이었다.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언니..인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그리고 내가 뭐 잘못된 것 있나? 이상하잖아.."

그리고 연수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대자보를 썼다. 하지만 연수의 이름은 이미 저쪽에서 쓴 대자보를 통해 밝혀져 있었다. 연수가 자신의 손으로 대자보를 쓰고 있던 그때 붙여졌던 것이다. 연수의 친구들이 그걸 보자마자 이름을 찢었지만 이미 공개는 된 상태였다. 연수는 의연했다.

"괜찮아요 언니..어차피 상관없었어요"

우리도 저쪽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명을 단 대자보가 나붙었다. 학교에서는 난리였다.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안되니 당장 대자보를 떼라고 했다.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만 망신이라면서 필릭 뒤풀기 시작했다. 자취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면담을 하지 않던 교직원과 교수들은 이제 술을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자보를 찢거하고

학교와 면담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진상조사위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나 교직원과 교수들은 난색을 표했다. 양쪽 주장이 너무 달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였다. 이것은 주장이 다른 문제가 아니었다. 가치관의 문제였다. 강간범은 저항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라는 거였고, 우리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항의 유무가 강간죄를 성립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은 법전이었다. 법전의 형법에 보면 준강간이라는 말이 있다. 준강간은 강간에 준한다는 뜻으로 피해자가 음주, 수면등의 상태로 저항을 하지 않거나 동의의사를 분명치 못하는 상태일 경우, 심지어 동의할 경우에도 그것은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판단을 못하겠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스캔들로 취급하고 있었다. 징계권을 가진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니 앞길에 막막했다. 법정으로 가게 되면 아주 오래걸리고 힘들텐데..자신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학생회에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생회에서 성명을 발표해도 강간범은 버티면 그만이었다. 징계권도 없는 데다가 친구들을 구슬리면 되는 일이었다. 실제로 강간범과 친구들은 단과대 학생회장을 만나러 다녔다. 총학생회장은 술이 벌겍게 취해서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이 성폭력사건에 다 묻혀 버렸다고 짜증을 냈다. 부총학생회장은 강간범과 같은 과 동기에 친구라며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없는 입장이라며 미안하다했다. 시간을 끌면 끝수목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물론 별별 얘기가 돌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심지어 진영이가 늦게 귀가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소리도 있었다. 진영이는 펄쩍 뛰었다.

"늦게 들어온거랑 무슨 상관어람. 내가 안들어오기라도 했으면 아주 창녀로 몰 분위기네"

실제로 늦게 술집에서 일하다가 온 것은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려왔다.

나는 주로 나쁜다는 비난을 받았다. 총학생회장이라는 위치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에 총학생회에서 해결했던 성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순순히 처벌을 따라서 별 잡음이 없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법정싸움과는 완전히 달랐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였다. 모두 어설픔고 서툴러서 당황스러워 했다. 이것은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원이 해야 할 일이었다. 같은 학생의 위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렀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다. 평소에 여학생회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특히 복학생 남자들-은 우리가 서툴고 비전문적이라고 비난을 해댔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서툴고 비전문적이며 때때로 어리석기까지 했다. 하지만 당장은 우리 밖에 없었다. 어리석다고 비난을 할 게 아니라 도와줄 일이었다.

여론은 소문만 아주 민감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우리는 기소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시 비슷한 사건들로 골머리를 썩이던 몇몇 학교와 함께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처음에 7여개의 학교로 시작했던 연대회의는 학내 성폭력 근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폭력 학칙제정을 목표로 싸우고 있다. 지금은 18개 학교로 늘어났고, 전북여성연대회의도 생겨났다. 성폭력 학칙제정은,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내에 성폭력에 관련된 원칙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발동된 것이었다. 이것은 97년, 성폭력의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난 여학생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며 찾아낸 문제였다.

경찰서에서

처음에 경찰서에 갔을 때는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관한 악명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제 2의 강간이니 제 3의 강간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피해자를 의심하고 본다는 얘기, 사건의 정황을 말할 때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찰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그래서 연수와 나는 경찰서로 가기 전에 여러 번 진술하는 연습을 했다. 경찰관이 뭐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자고 손을 잡았다.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것을 쓰는 데에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연수가 불렀다. 같이 들어가려 하자 나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했다. 병원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는 거의 못겨날 뻔하다가 겨우 연수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나이든 경찰이 질문을 했다.

"음. 그래 강간을 당했다고?"

"네"

"어쩌다가 (고소장을 주욱 살펴 본다) 아 이렇게 된 거였군..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허참"

나는 발끈 열을 받았다. 태도도 그렇지만 대뜸 반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 존대말을 써주시겠어요?"

경찰이 힐끔 쳐다봤다.

"넌 뭐야? 나가봐"

"보호자입니다. 여기 있겠어요"

경찰이 다시 연수에게 물었다.

"전에 경험 있어? 이거 화간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할거야?"

연수는 고개를 뺏뺏이 들고 경찰을 노려보았다.

"우런 고소를 하러 온 거지 심문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하신 말 취소해 주시죠"

옆에 앉아 있던 나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하자면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곧 쫓겨났다. 바깥에서 서성대다가 답답한 마음에 상담소에 전화를 했다. 상담소에서는 마침 동대문경찰서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 여성단체에서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다. 상담형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더니 그것은 좀 힘들지만 말해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안에서는 경찰이 고등학교 때의 학생주임같은 태도로 크게 얘기해!라고 작은 목소리의 연수에게 소리가 지르고 있었다. 그 소리가 한한테도 들릴 정도였으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것이다. 한 시간쯤 흐르자 연수가 나왔다. 연수는 그 일 이후로 계속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다.

연수의 핏기없는 표정을 보니 어쩔나는 말도 필요없었다.

다행히 여성단체의 압력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곳의 조금 높은 조사계장이 나를 불렀다.

"저 사람이 워낙 나이들고 그래서 보수적이라 그러니깐 이해하세요. 담당형사를 바꾸는 것은 원래 안되는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한 번 해볼게요"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조서도 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작성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연수가 말한 것을 형사가 멋대로 받아 적은 모양이었다. 고소장도 다시 접수하기로 했다. 마음이 놓였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는 일이었다.

기소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조사계장은 가끔 내게 호출을 해서 만나자고 했다. 경찰서 안에서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보니 바깥에서 보자고 했다.

"안 좋게 보다니요? 도움을 받는 것인데 왜요?"

"아. 원래 고소가 되고 나서 원고를 만나면 뭐 뇌물이다 뭐다해서 사람들이 눈에 뭘 쓰고 보기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난 경찰서 근처의 다방에서 가끔 조사계장을 만나 커피를 마셨다. 조사계장은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최근에 성폭력 사건중 처리된 사례를 예를 들어주기도 하고, 검사를 만난 얘기도 해 주었다. 몇 번인가 학교로도 찾아왔다. 교문 앞에 선글라스를 쓰고 찾아와서 호출을 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려 나갔다. 조사계장은 여기는 우리 관할구역이니 차에 들어가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더니 같이 태능이나 시흥으로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였다. 정신이 번쩍 났다. 이 아저씨가 점점 이상해지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이 있다고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별일이 없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화가 나서 딱딱거리고 싶었지만 행여나 일이 잘못될까 싶어 친절하게 말했다.

"제가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좀 바쁘네요. 무슨 일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는 며칠 연락이 없었다. 그 사이 강간범은 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했다. 다시 경찰서에 갔다. 조사를 받기 전 조사계장이 나를 불려서 충고해주었다. 집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혼자 결정했다고 하지 말라는 등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사무적으로 해 주었다. 고맙웠다. 내가 오해를 한 거지 싶었다.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를 받다니 재미있는 일이었다. 거기에는 증거물로 학교에 붙였던 대자보가 뜯겨져서 있었다. 대자보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와 있었군.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진술을 했다. 형사는 내가 한 말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조서를 고쳐 써야 했다.

조서를 다 쓰고 나가려하자 조사계장이 불렀다.

"요즘은 시간이 어때? 괜찮아?"

뭐라고 해야 할 지 몰라 서툴게 웃음을 지었다.

"내가 연락하면 만나줄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 딸은 너무 위협적이었다. 나는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이제 의논할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사계장은 하루에 몇번씩 호출을 했다. 나는 그때마다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해서 가끔 사람들이 돌려받으면 기분 탓이었는지 웃는 소리가 났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성질 좀 죽여서 사건만 잘 풀린다면 참을 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한 세 번 쯤 만났다.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갔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판단이 서질 않았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갈등은 계속됐다. 조사계장이 하는 말을 듣고 웃고 즐거워 하기란 곤역이었다. 그 사람은 단지 나한테 호감이 좀 있고 도와주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불편했다. 결정적으로 대화내용이 점점 수상해져갔다.

"아내와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사실 우리 부부는 그래..바람은 피워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남이 하면 스펀들이지만 내가 하면 연애잖아?"

슬쩍슬쩍 말을 놓아가며 이런 부부사이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나처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을 알아 두는 것도 나쁠 거 없는 일이에요. 딱 말로 나한테 뭐 부탁하면 내가 안들어주겠어요? 그리고 나는 대학시절의 기분을 느껴볼 수 있어서 좋구."

이렇게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는가 하면..노래방에 가서는 굳이 게임을 하겠다고 우기는 일도 있었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면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이 노래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점점 가관이었다. 싫다고 하니 나를 놀리며 무슨 이상한 생각이라도 하는거냐며 자기는 순수하다고 했다. 가끔 손을 슬쩍 잡기도 하고 야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손을 빼거나 면박을 주었다. 하지만 조사계장은 이제 마음을 놓았는지 그러면 그냥 웃을 뿐이었다. 나는 점점 미칠 지경이 되어갔다. 이런 일이 몇 번 계속되자 결국 나는 뭇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연락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달 정도 호출기를 울리다가 대답이 없자 집으로도 전화하던 그 아저씨는 결국 계줄에 지쳐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의 또 하나의 악몽이었다.

경찰서가 옮겨졌다. 피고소인(강간범)쪽이 옮겨졌다고 들었다. 이렇게 옮겨가면 또 시간이 흘러간다.

나는 조금해져갔다. 연수도 나도 진영이도 제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거야. 아직 기소도 안되고..왜 이런거지..그때부터 아주 지루한 기다림이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하면 형사는 "합의 아직도 안했어?" 이렇게 말했다. 절대 합의는 안할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들은 합의만 하면 사건이 해결되니깐 합의를 하기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기다림은 너무 지루했다. 특히 연수가 못 견뎌하고 있었다. 그 때 연수는 휴학을 하고 집에만 있었다. 진영이가 내게 와서 말해주었다.

"언니. 연수가 악몽을 꾸다. 계속 같은 꿈을 꾸고 있어"

"어떤 꿈인데"

"그날 계가 덮칠 때 잠이 깨고 물어뜯고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는 꿈인가봐..몇번씩 꾸더라"

"..."

"..."

우린 모두 말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다고 생각할 무렵 작은 일이 일어났다. 강간범이 연수네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연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위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준 터였다. 알고 보니 경찰서에서 알려준 것이었다. 옮긴 경찰서의 담당이 젊고 트인 사람이라 잘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참하게 박살난 것이다.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연락처를 비밀에 부친다는 기본도 지켜주지 않는 경찰, 친구와 가족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협박과 간청을 반복하는 강간범측, 성폭력을 '학교방산'쯤으로 사고하는 학교의 어른들, 주눅들어하는 연수의 주변사람들 속에서..이렇게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연수는 고소를 취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밀고 나가다가 포기해버렸는데도 이해해 주었던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나를 비난했지만 좀 더 잘 싸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연수와 "언니, 나 여성운동할거야. 내가 아니면 안될 것 같아"라고 주먹을 불끈 쥐는 진영이를 본다. 도대체 저런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거지라고 경탄을 한다.

그랬다. 우리들에게 그 사건은 별 일이 아니지는 않았지만 또한 전부를 잃을 만한 일도 아니었다.

적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들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럽지 않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했지만 힘이 닿지 않았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곳곳하게 버티면 승산은 얼마든지 있으며 적어도 걸으러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법조항에 따르면 우리가 불리할 것은 없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과정을 만들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것이다. 승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질지 못하도록 온갖 곳에서 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입을 닫으며

나는 이 사건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6개월간의 싸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나와 연수, 진영이는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싶어했다. 나는 무기력했다. '난 그래도 책에 나오는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믿고 싶진 않았어. 그래도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 씨알하나도 안 틀리고 책에서 본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야. 먼저 알고 있었던 게 무슨 소용이야'. 세상이 내게 등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확인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순간 순간을 되짚어 보았을 때 떠오르는 내가 한 말과 행동들의 어리석음은 몸서리를 치게 했다. 나는 연수의 당당함을 늘 외연한 척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수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연수의 말을 막고 행동을 묶었다.

'연수는 늘 내게 고맙고 미안하다 했지.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 정말로 나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을까.'

연수가 나를 원망할까봐 무서웠다.

연수가 끝까지 싸워주기를 바랐던 내 마음이 연수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을까봐 무서웠다. 연수는 나를 보기 싫어할 거다. 나는 '옆에 있어줄게'라고 한 주제에 줄임해버리고 연락도 하지 않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연수와 진영이와 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연수의 학점자랑과 나의 졸업후 근황같은 것이 오갔다.

입을 채 때기도 전에 연수가 말을 시작했다.

"언니. 언니가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얘기를 같이 정리하고 싶어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이 얘기가 나올까봐.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나에게 그 얘기를 묻지도 않고, 내가 편찮냐고 하지도 않아요. 나도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후훗. 언니들이라면 분명히 정면으로 물어볼 줄 알았어. 잘 살고 있는거냐? 라고 나 잘 살아요. 그리고 언니한테 참 미안해요. 언니라면 더 싸우고 싶어했을텐데"

"아니야. 나도 그때 많이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었더랬어. 네가 힘든 만큼 나도 힘들었어. 우리 셋 다 같이 힘들었잖아. 미안하다고 하지마."

"응. 그래요. 언니네들은 자기 일인 양 그랬죠. 그래서 어쩌면 더 만나기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손만 뻗으면 와줄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머뭇거리게 되었죠. 사실 나 원망도 했어요. 언니들은 이 사건으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도 잠시 했구요.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깐 나도 그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말을 하기가 두려워지더라구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었지. 이렇게나 열심히 싸웠는데 뭐 하나라도 얻지 않으면 우리들 모두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그래서 성폭력 학칙제정이나 성폭력상담소든 간에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나는 거의 미쳐 있었어. 나 역시 네가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내가 하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지도 의심스러워지고 그랬지"

"사실 언니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언니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언니들에게 말을 걸 수 없었던 것은 이기적인 생각에서였어요. 언니들이 흔들리면 그땐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들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내가 불안해지니까요."

"그래도 모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내가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왔더라면..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 말해 줬더라면.. 훨씬 덜 힘들었을거야.. 너한테 미움받는게 제일 무서웠으니까"

"언니들은 내가 마지막에 찾아갈 최후의 보루예요. 내가 언니들을 찾지 않았던 것은 내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서 참 다행이에요. 언니 나 참 약해빠진 애예요. 난 이 일이 경찰관의 말처럼 좋은 경험 같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곱게 자란 아이들보다는 내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완전히 잊어버린 셈 치고 살았겠지. 그리고 비슷한 얘기만 들어도 가슴에 들하나 없는 기분이었을거야. 내가 그때 뭔가 잘못된 것은 없었나하고 생각하기도 했겠지. 그때 그런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싸우면서 점점 더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니다. 이건 분한 일이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나한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나 후회하지 않아요. 잘살거야. 건강하게."

1년만의 대화는 냉정하지도, 분만쳐오르는 감정도 없이 담담하게 계속되었다.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같은 것을 생각해내며 서로를 이해시키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서로 연락하며 살겠구나. 서로 등도 되어 주고 어깨도 되어 주며 살 수 있겠구나.

연수와 얘기하고 나서, 나는 구부려졌던 등이 조금씩 펴지고, 죄책감이나 후회없이 담담하게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니, 그 때에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반짝거리고 있었던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강간범이 화간이라며 대자보를 쓰자 비분강개하여 달려왔던 졸업생 언니들, 그 말이 어떻게 잘못된 말인지 조목조목 반박한 이름 모를 여학생의 무명대자보, 이 사건이 터지자 이곳저곳에서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며 쭈뼛거리며 찾아온 여학생들,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성폭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학교측의 '약간의' 변화, 그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사건들에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한 몇몇 과 여학생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나를 때로 미치게 만드는 나의 잃어버린 세 시간의 기억들에 대한 생각을 시작할 용기가 났다. 어둠 속에서 나의 뒤통수를 때린 그 묵직한 손에 대한 기억들을, 연수의 용기는 나의 용기로, 나의 용기는 또 누군가의 용기로, 그렇게 이어질 거라 생각하며.

반성폭력 운동에서 실명공개 의미

- 100인위의 전략, 그리고 학내 여성운동의 방식 혹은 전략¹⁾

by 동진

0. 들어가며

100인위 관련 글을 쓸 생각을 하면서, 사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등을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100인위의 활동이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 던지는 의미들이 폭넓고 다층적이었던 때문일 것이다.

덧붙여 아직까지 학단위에서 100인위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이야기 자리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1. 학내여운단위에서의 실명공개 전략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

100인위에서 운동사회내 성폭력 사례들을 '폭로'라는 형식을 통해 공개한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서 통신상으로 그리고 오프 상으로 많은 논쟁들이 오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특히 반성폭력운동의 전략으로서 혹은 반성폭력운동의 원칙이나 과정으로서 '사건을 공개한다'는 행위가 갖는 의미에 대한 논쟁들이 다양한 입장을 통해 제시되었다.

실제로 성폭력사건을 '공개'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나갔던 것은 학단위에서 시작된 방식이지만 100인위 공개는 학단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과 의미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학단위의 사건공개는 사실상 가해자의 '공개실명사과자보'를 통해 구체화되었던 반면 100인위의 사건공개는 가해자와의 합의 없는, 피해자의 자기피해 언어화에 기초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함의들을 담고 있는 방식이다. 가해자의 '합의'를 받느냐, 마느냐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느냐, 마느냐²⁾의 선택지는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성폭력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의 위치(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피해자의 위치까지)를 설정하는 문제 등과 연결되는 복합적인 것이다.

우선 학내 여성운동 진영에서 사건공개 및 가해자의 공개실명사과자보문을 반성폭력운동의 원칙 혹은 전략으로 채택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³⁾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사건은 개인-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공동체의 문제이다.'

- 1) 운동의 방식/입장과 전략이 시간이 흐를수록 섞여 들어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구분되지 않음으로서 하나의 고정된 이론(정식)으로서 굳어가는 한편 새로운 전략들을 찾아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 2) 정확히 사과를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사과문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시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대상 및 목적을 설정하는 것에 깔린 기본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지에서 '실명공개'와 '실명공개사과'는 다양한 차이들을 드러내게 된다.
- 3) 사건공개에 대한 원칙/전략에 대한 입장은 여성주의 내부에서도 차이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 처음 세기된 맥락을 제대로 된 자료수집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분석하지 못했기에 잘못 판단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을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정확히는 가해자)이 속한 공간에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과 해결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폭력사건이 항상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이고 성적인⁴⁾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일상화되고 정상화되어 문제 제기조차 되지 못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도 오래되고 구조화된 폭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들 알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공개 전략이 현실화되고 대학사회에서 일정정도의 동의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된/회색된 부분들은 없는 걸까?

① 사건공개 목적 및 의의

'사건공개'가 초기에 가졌던 목적은 대략 몇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데 첫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성폭력을 개별적인/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역사적으로/사회적으로 뿌리깊게 만들어져 온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공개된 사건의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무수한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드러내지 못한 무수한 피해자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사건공개는 피해자인 여성들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이 공개적인 공간으로 언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의 공개, 그리고 공개된 사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 등을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되고 나아가 이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은 사건공개 전략이 여성들에게 준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효과는 직접적/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성폭력사건이 무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공개는 자신의 경험을 '사실'로 드러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자신의 몸/자아에 남아 있는 그 고통과 분노들을 공개적인 언어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화⁵⁾ 할 수 있고 나아가 이것을 '피해' 및 '사실'로서 공표하고 인정받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⁶⁾ 마지막으로 사건의 공개는 가해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성폭력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과 나아가 가해자의 이후 행동들을 통제하게 되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갖는다.⁶⁾

② '공동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그리고 가해자 사과문의 효과

그러나 이같은 목적들이 모두 공개적인 여론단위의 입장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략상의 선택'이라는 한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회색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라는 공간설정,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과'로서의 가해자공개사과문 등을 들 수 있다. 가해자가 공개설명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가해자가 공동체 문화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 제시된다. 그러나 과연 공동체 문화는 그 가해자가 없다면 순수하고 평등한 것이었던 말인가? 당연히도 아니다. 그러나, '남성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온건함과 휴머니즘으로 포장된 남성의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와 일정한 타협지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해자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속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해를 끼친

4) 여기에서의 '성적인'의 의미는 gender나 sexuality의 관점에서 파악된 것이 아닌 그야말로 개인들 사이의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읽혀지는 '성관계'로 해석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을 '폭력'이나 '성'(gender/sexuality)의 문제가 아닌 성애적 관계로 말하는 방식이다.

5) 물론 사건공개가 필연적으로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그런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혹은 피해자가 예상치 못했던 2차 가해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로 향할 때 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또한 사건을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한다.

6) 물론 한 명의 가해자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드러난 한 명에게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한편 자신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공개 전략이 안정화되면서 그같은 '분리' 경향들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것이며 실제로 그 공동체 자체가 매우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그들만의 공간임을 드러내고 나아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가능하게 한, 그 공동체 자체의 성폭력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같은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코 가해자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⁷⁾ 가해자는 결코 공동체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질 수 없다.

이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련의 가해자공개사과문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이 있고, 그 유형들 중의 하나는 '공동체'에 사과한다는 애매한 문구이다. 어쩌면 그들은 '문제없이 잘 유지되던 과/반/동아리에 이런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 주셨던 학우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 거다. 덧붙여 '가부장적 집안'에 대한 고백과 '남고시절의 경험' 및 '포르노를 통해 형성된 왜곡된 성관념'이란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적인 탓으로 돌려 버리려는 방어적 행동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등은 빠져 있거나 애매한 말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사과문은 가해자의 항변기회를 만들어주고 나아가 가해자의 죄의식을 털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심지어는 세간의 동정표마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연 가해자의 공개사과문이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자의 사과문을 봄으로 인해 상처와 분노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을 공개하고 가해자를 자신의 공간에서 분리시켜 내는 것, 그리고 재교육 이수를 통해 최소한 또 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해자가 '공개사과'라는 하나의 '의례'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다시 당당히 부활하는 상황은 피해자를 더욱 위협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기도 한다.

③ 전략 그리고 문제

이같은 한계들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일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여성활동가들조차 '공동체' 및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환상 혹은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공동체의 문제'라는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중적 동의'를 얻어내는 목적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제시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주의적 급진성이 희석되고 '휴머니즘적 여성운동'으로 요구받게 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지점들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지나쳐 오게 된 것은 분명한 한계다.

'학칙제정'이라는 대중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그리고 학생회칙 및 자치규약 등을 제정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상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것 등이 효과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한계선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 것이다.

2. 100인위의 '폭로' 방식이 학내반성폭력운동에 던지는 함의들.

앞서 말했듯이 100인위 사건공개 방식은 가해자와의 합의나 조율 과정 없는 피해자의 목소리 드러내기 즉 '폭로'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학내 반성폭력운동의 일반적 방식과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갖는다.

7) 초기의 반성폭력운동에서 가해자를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로까지 상정하는 동의 입장들이 있다. 이는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 및 높은 기대치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는데, 이같은 관점은 결국 '(나기간에) 변화 가능한 공동체'라는 지나친 이상으로 인한 판단착오이거나 혹은 남성을 적으로 설정해서, 안 된다는 강력한 목소리에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악의 경우 드러난 입장에서는 전자의 것이 더 강하다.

'가해자의 합의 없이도 사건규정이 성립한다'는 것이라든지, '사건과 가해자를 공개하는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는 출발 지점이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징계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의무는 가해자의 소속/활동 단위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 등은 학내 반성폭력운동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① 사건해결과정에서의 가해자의 위치 그리고 책임

사실상 학내여운단위에서 채택한 '비대위'라는 방식은 일정정도 가해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는 가해자의 발언권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 물론 비대위는 애초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임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발언을 완벽하게 배제하거나 가해자의 합의 없이 사건을 공개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외부적으로 비대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과 비대위 내부적으로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객관성'에 대한 기대는 비대위가 피해자 지원체계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치고 나갈 수 있음을 생각 하더라도 사건을 '해결'하는 위치로서의 비대위 역할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 과연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것인지,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위가 가해자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대위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가해자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지는 주체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여운단위에 그만큼의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정작 가해자가 속한 단위의 구성원들은 손을 놓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역할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가해자를 공개만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냐,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협박이나 '우리는 공동체를 바꿀 능력이 없으니 여성주의자들이 우리들을 바꿔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비굴한 척 하는 뻔뻔스러움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가해자의 위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이상주의적 경향 혹은 가해자를 명백한 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한계와 더불어 성폭력 문제를 드러냄에 있어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폭력과 권력의 관계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들을 보여주는 지점들이다.

② 지속적인 언어화, 새로운 언어화

이 부분은 100인위 발제문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며, 글의 전체 맥락과 약간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 듯하다.

100인위에서 공개한 사건들의 경우 학내 여성운동가들조차 '확실하게 동의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 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폭넓은 그리고 섬세한 성폭력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통신상에서 성폭력이나, 아니나 의 시비가라기와 피해자의 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에 대한 냉소적 비웃음들이 난무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며 주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그 성격이었다.

학내에서 공개되는 성폭력이 점점 더 급진적이고 폭넓은 것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및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및 그것을 언어화 할 수 있는 힘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과거의 것과 다르지 않거나 혹은 더 냉소적인 비웃음 혹은 엄중한 재단 등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운단위에서도 그러한 냉소와 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논리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⁸⁾

8)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조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결국 '가해자도 사회구조적 피해자'라는 식의 황당한 입장들이 공공연히 드러났던 점이나,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인 '갑싸안기'로 모아지는 경향 그리고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 등에서 이같은 애매한 '진중'의 한계들은 잘 드러난다.

9) 현재의 상황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조금씩